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공무원징계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·수사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「국가공무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('24. 12. 31.), 동 법에서 위임한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·수사자료 항목을 신설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제도적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·수사자료 항목 신설(안 제7조 일부 개정 및 제8조의3 신설)

1) 감사원의 조사자료

- 감사보고서, 문답서, 확인서 등 그 밖의 조사자료

2)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자료

- 신문조서, 진술조서, 송치 결정서, 불송치 결정서, 공소장, 불기소 결정서 등 그 밖의 수사자료

나. 징계 의결 ‘경정’ 결정 시 작성 방법 및 통보대상 규정 신설(안 제18조의2 일부개정 및 별지 제4호의5서식 신설)

1) 경정결정 작성 방법

- 경정결정 원본은 징계등 의결서 원본 첨부, 경정결정 정본 송달

2) 경정결정 통보 대상

-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, 징계처분등 처분권자 등

다. ‘징계부가금 관리대장’ 신설 및 시스템상 관리 근거 마련(안 제25조 일부개정 및 별지 제6호서식 신설)

-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납부·채납 현황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관리대장 마련 및 시스템상 관리 근거 마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3. 25. ~ 5. 7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“조사기록”을 “조사자료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2호 중 “수사기록”을 “수사자료”로 한다.

제7조제6항제5호 중 “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”을 “조사자료 또는 수사자료”로 한다.

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8조의3(조사·수사자료의 요청)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사·수사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감사원의 조사자료 : 감사보고서, 문답서, 확인서 등 그 밖의 조사자료
2.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: 신문조서, 진술조서, 송치 결정서, 불송치 결정서, 공소장, 불기소결정서 등 그 밖의 수사자료

제18조의2를 제18조의2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경정결정의 원본은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, 경정결정의 정본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1. 징계의결등 요구권자
2. 징계처분등 처분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등 이후 징계의결등에 경정이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는 경정결정의 정본을 제2항 각 호의 자와 징계처분등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제25조 제목 중 “징계등 처리 대장”을 “징계등 처리 대장 등”으로 한다.
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·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두어야 한다.
- 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“제1항에도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에도”로, “각급 징계위원회는”을 “각급 징계위원회와 징계처분등 처분권자는”으로, “대장을”을 “대장 및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의2서식 중 “「공무원 징계령」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”를 “「공무원 징계령」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급적용)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2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■ 공무원 징계령 [별지 제4호의5서식]

[]징계의결서 []징계부가금 의결서 경정결정 []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소속	직위(직급)	성명
주문	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 등 경정 사항 기재	
이유	경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	

년 월 일

징 계 위 원 회

청인

징계부가금 관리대장

인적사항					징계부가금 처분							징수·채납 현황 등						납부현황	
번호	소속	직급	성명	현	처분일	징계부가금 대상금액	배수	최초 징계부가금 (대상금액×배수)	조정· 감경사유	조정· 감경금액	최종 징계부가금 (최초- 조정·감경금액)	납부고지서 교부일	독촉일	조사일	압류일	징수일	세무서 위탁일	납부액	미납액
				소속 직위								납부기한	납부기한	조사결과	압류재산	징수재산	통보결과	납부일	미납사유
					...		배					...	...	...	...	...	...		
					...		배					...	...	...	...	...	...	...	
					...		배					...	...	...	...	...	...	...	
					...		배					...	...	...	...	...	...	...	
					...		배					...	...	...	...	...	...	...	
					...		배					...	...	...	...	...	...	...	
					...		배					...	...	...	...	...	...	...	
					...		배					...	...	...	...	...	...	...	
					...		배					...	...	...	...	...	...	...	
					...		배					...	...	...	...	...	...	...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징계의결등의 요구) ②(생략) 1.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, 혐의자·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가 기록 2.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, 공소장, 혐의자·관련자·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. (생략) ③ ~ ⑤(생략) ⑥(생략) 1. ~ 4. (생략) 5.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. ~ 8. (생략) ⑦ ~ ⑧(생략)	제7조(징계의결등의 요구) ②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--- ----- -----자료 2. ----- ----- ----- -----자료 3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(현행과 같음) ⑥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조사자료 -----수사자료 6. ~ 8. (현행과 같음) ⑦ ~ ⑧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3(조사·수사자료의 요청)</u> 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사·수사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감사원의 조사자료 : 감사보고서, 문답서, 확인서 등 그 밖의 조사자료 2.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: 신문조서, 진술조서, 송치 결정서, 불송치 결정서, 공소장, 불기소결정서 등 그 밖의 수사자료
<u>제18조의2(징계의결등의 결정)</u> 제18조에 따른 징계의결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나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.	<u>제18조의2(징계의결등의 결정)</u>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제25조(징계등 처리 대장)</u>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②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경정결정의 원본은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, 경정결정의 정본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1.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2. 징계처분등 처분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등 이후 징계의결등에 경정이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는 경정결정의 정본을 제2항 각 호의 자와 징계처분등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<u>제25조(징계등 처리 대장 등)</u> ① (현행과 같음)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·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 두어야 한다.	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처리 대장을 「디지털 인사관리규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·유지·보관할 수 있다.</u>	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<u>각급 징계위원회와 징계처분등 처분권자는 징계등 처리 대장 및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「디지털인사관리규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·유지·보관할 수 있다.</u>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인사혁신처 복무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433